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75 호 2021. 1. 28.(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7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8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9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0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26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1호[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30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2호[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3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15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18호[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42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67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주민소통담당관·경제일자리담당관·회계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주민소통담당관·경제일자리담당관·회계담당관·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총무과장·문화체육과장·관광해양개발과장·도서관과장·징수과장
·부과과장”을 “총무과장·문화체육과장·교육청소년과장·관광해양개발과장·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별표의 주민소통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2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회계담당관란 다음에 징수담당관란 및 부과담당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수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 9.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 의존수입(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세입정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13.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14. 공매, 교부청구,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5.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19.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1.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 23.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 24.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5.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부과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7.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8. 세목별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9.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 | |
|-----------------------------|
| 10.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
| 12.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
| 13.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
| 14.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 |
| 15.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 16.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 17.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별표의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란 중 제14호, 제18호 및 제4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 제58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문화체육과란 다음에 교육청소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청소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4. 민·관·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지원 업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 인프라(지역거점 학습공간) 구축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외된 평생학습 환경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4차 산업 대비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19.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별표의 관광해양개발과 분장사무란 중 제26호를 삭제하고,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2. 국내·외 여행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43.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별표의 징수과란 및 부과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란 중 제74호의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별표의 가족정책과 분장사무란 중 제8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안전정보과 분장사무란 중 제47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1.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을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본청 분임징수관란 중 “부과과장, 징수과장”을 “부과담당관, 징수담당관”으로 하고, 제1관서 분임징수관란 중 “세입업무 담당과장”을 “세입업무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과장”란을 각각 “부서장”란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7-2) 중 “부과과”를 각각 “부과담당관”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교육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을 규정하고, 2021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1) 징수과·부과과 실·국 조정사항 반영(안 제3조)

- 행정지원국 징수과, 부과과 → 기획조정실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2) 교육청소년과장 직급 규정(안 제4조)

나.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별표)

1) 주민소통담당관 :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2)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 징수과, 부과 사무 이관·신설

3) 문화체육과

- 평생교육 관련 사무 삭제

- 국내·외 여행업, 유원시설업, 종합복지회관 관련 사무 삭제

4) 교육청소년과 : 교육정책, 평생학습, 청소년 관련 사무 신설

5) 관광해양개발과

- 추억의 학교 운영 사무 삭제

- 국내·외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련 사무 신설

6) 징수과, 부과과 : 삭제

7) 사회복지과 : 자구 수정

-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

8) 가족정책과 : 청소년 관련 사무 삭제

9) 안전정보과

-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관리 사무 삭제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 신설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68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획조정실 주민소통담당관 단위업무란 중 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기획조정실 회계담당관 단위업무 다음에 징수담당관 및 부과담당관 단위업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징수담당관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당 관 · 과 장	실 ·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1. 세정 기획	가. 세무행정의 종합기획		기안			○	
	나. 지방세 업무 연찬회		기안		○		
	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 책정	기안			○		
	라. 지방세 징수관련 제도개선	기안			○		
	마. 세무공무원 증명서 발급	기안			○		
2. 금고 관리	가.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체결		기안			○	
	나.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감독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당 관 · 과 장	실 ·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3. 기부금품 관리	가. 기부금품 모집 통제		기안			○	
4. 세무전산	가. 지방세 전산화 시책추진	기안			○		
	나. 지방세 전산실 기기 점검 및 운영	기안	○				
	다. 지방세 체납·통계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라.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자료 관리	기안		○			
5. 세입 관리	가.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	기안			○		
	나. 은행일시 차입		기안			○	
	다. 교부금·보조금·전입금 세입정리	기안		○			
	라. 회계간 자금의 일시 진출 및 환입		기안		○		
	마. 세계 잉여금 결산전 이입	기안		○			
6. 세입 결산	가. 지방세 세입 결산	기안			○		
	나. 국세 세입 결산	기안			○		
	다.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전 작성	기안	○				
	라. 세입부 정리	기안	○				
7. 지방세 통계 및 징수 월보	가. 지방세 통계연감 총괄	기안		○			
	나. 지방세 징수 월보	기안		○			
	다. 국세 징수 월보	기안		○			
8. 지방세 수납 사항 정리	가. 영수필통지서 전산소인 및 정리 보관	기안	○				
	나. 세입일계표 작성 및 일일결산	기안	○				
	다. 징수부 및 체납부 관리(현·과년도)	기안	○				
9.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가.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기안		○			
	나.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	기안		○			
10. 환급금 관리	가. 환급금 통지	기안	○				
	나.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환급금 지급명령원부	기안		○				
11. 체납세 징수 기획	가.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액 현황과악 및 분석	기안		○			
	다. 징수기동반 편성 및 운영		기안		○		
12. 체납세 일반	가.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기안		○			
	나.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	기안		○			
	다. 체납세 일보 및 월보	기안		○			
	라. 영수원부 관리	기안		○			
	마. 체납세 징수독려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바. 체납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사항		기안				○
13. 체납자 규제	가.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기안		○			
	나.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기안		○			
	다. 조세범처벌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체납처분	가. 체납자 재산조회(조사)	기안		○			
	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기안		○			
	다.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압류관련 각종 공부 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당 관 · 과 장	실 ·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마. 체납처분비 조정 및 징수 (1) 체납처분비 조정에 관한 사항 (2)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체납자 관리	가. 고액체납자 관리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다. 체납자료 관리 및 전송		기안	○			
16.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 번호판 영치 계획 나. 번호판 영치 및 반환 다. 번호판 미반환자 조치	기안		○			
17. 결손처분	가. 결손 결의 결정 (1) 5,000만원 이상 (2) 5,000만원 미만 나.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기안			○		
18. 지방세 제증명 발급	가.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접수 및 발급 나. 납세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	○					
19. 세외수입업무	가. 세외수입 총괄 지도 · 감독 나.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추진 다. 세외수입 통계작성 라.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		기안		○		○
20. 수입증지관리	가. 수입증지 수급운영 관리 나. 수입증지 수불관리	기안		○			
21. 세외수입 관리	가. 세외수입 세입 결산 나. 세외수입 징수 월보 다.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관리 라.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 마.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기안			○		
22. 채권 관리	가. 채권 현재액 보고	기안			○		
23. 징수 · 감액 결의	가. 징수결의 (1) 5,000만원 이상 (2) 5,000만원 미만 나. 감액결의 (1) 1,000만원 이상 (2) 1,000만원 미만 다. 가산금 · 증가산금 조정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담 관· 과장	실·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1. 부과행정 기획	가. 지방세 부과행정의 기획		기안				○
	나. 지방세 업무 연찬회		기안		○		
	다.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	기안			○		
	라. 지방세 부과관련 제도개선	기안		○			
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가. 세목별 정기·수시분 부과	기안		○			
	나. 연부취득물건 자료수집 및 부과	기안		○			
	다. 자동차세 년·분납신고 처리	기안		○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마. 징수유예						
	(1) 징수유예(1,000만원 이상)		기안		○		
	(2) 징수유예(1,000만원 미만)		기안	○			
	바. 물납, 분납의 허가 신설	기안		○			
3. 지방세 부과 관련 자치법규 운영	가. 방침결정 및 개정안 확정		기안				○
	나. 입법예고	기안		○			
	다. 법령 제·개정내용 직원교육		기안	○			
4. 지방세 통계	가.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	기안		○			
5. 지방세 소송	가.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		기안		○		
6. 위원회 운영	가. 지방세 심의 위원회 운영		기안			○	
7. 과세표준액 결정	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		기안				○
8. 지방세 구제	가. 구세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나. 구세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다.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9. 세무민원처리	가. 비과세·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	기안		○			
	나.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	기안		○			
	다. 납기연장 신청 처리	기안		○			
	라.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	기안		○			
10. 징수·감액 결의	가. 징수결의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감액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가산금·증가산금 조정	기안		○				
11. 비과세·감면결정	가. 1억원 이상	기안			○		
	나. 1억원 미만	기안		○			
12. 자진납부처리	가.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나.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13. 고지서 송달	가.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기안		○			
	나.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14. 과세자료 조사	가.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과세자료 이동·변동사항 정비	기안	○				
	다. 토지·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기안		○			
15. 유관기관 협조업무	가. 재산조회 회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당 관 · 과 장	실 ·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나. 과세자료 조회, 협조 요청	기안		○			
16. 지방세 분야 비리방지	가. 지방세 비리방지 계획수립		기안			○	
	나. 부과·징수 취약분야 자체점검		기안		○		
17.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나.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기안		○		
	다. 비과세·감면사항 사후조사	기안		○			
	라. 탈루세원 자료수집·조사	기안		○			
	마. 세무조사 규칙 제·개정		기안			○	
18.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대장관리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안		○			
	나. 세원 조사실적 보고(월·분기별)	기안		○			
	다. 법인대장 작성관리	기안		○			
19. 주택가격업무 기획	가. 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주택가격조사 종합 검토	기안		○			
20. 주택가격관리	가. 표준주택가격 관리	기안		○			
	나. 주택가격 조사	기안		○			
	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운영		기안			○	
	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작성·검토	기안		○			
21. 주택가격 전산화	가. 주택가격전산화 및 현황도 작성	기안		○			
	나. 주택가격자료 처리 및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다. 성과품작성 제출	기안		○			
22. 주택가격 이의신청	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기안		○			
23. 주택가격 열람	가. 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	기안		○			

○ 부과담당관

별표 1의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단위업무란 중 제68호부터 제7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단위업무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단위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교육청소년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당 관 · 과 장	실 ·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1. 교육 행정 지원	가. 교육 행정 업무 지원 및 협조사항		기안			○	
	나. 규정 주요시책 관련사항	기안		○			
	다.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관리	가. 교육경비지급 계획	기안				○	
	나. 교육경비지급 업무 일반	기안		○			
	다. 교육경비 지도점검	기안			○		
	라. 인터넷 학습 지원사업	기안		○			
	마. 무상(교복, 교육)지원	기안		○			
3. 평생학습 기반 구축	가. 평생학습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기안			○	
	나. 평생학습사업 실행계획 수립		기안			○	
	다. 평생학습사업 추진상황 보고		기안		○		
	라. 평생학습사업 성과보고 및 평가		기안			○	
4. 평생학습관 운영	가.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3) 평생학습관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4)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운영		기안		○		
	나.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1)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기안			○	
	(2)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기안			○	
	(3)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관리·운영		기안		○		
	다.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성과보고		기안			○	
	라.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1)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교류		기안		○			
5. 제3대학 운영	가. 제3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제3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제3대학 학사운영 결과 보고		기안			○	
6. 성인문해 교육	가.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1)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사업 계획		기안			○	
	(2) 성인문해교육 운영결과보고		기안		○		
	(3) 성인문해 교육기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조사, 관리, 평가		기안		○		
	나. 학력인정 교육의 지원						
	(1) 학력인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 학력인정 교육 운영 일반		기안		○		
7.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반사항		기안		○		
	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무릉서당 운영		기안		○		
	라.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담 당 관 · 과 장	실 ·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8.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	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기안					○
	나. 평생학습박람회 운영결과 보고	기안			○		
9. 정보화교육 추진	가. 맞춤형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기안		○			
	나.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기안		○			
	다. 맞춤형 정보화교육 결과 보고	기안		○			
	라. 정보화 교육장 관리·운영	기안		○			
10.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라.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마.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기안		○			
	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사. 청소년 지도협의회 지원·관리	기안		○			
	아. 위원회 운영	기안		○			
11.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 「청소년보호법」 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	기안				○	
	자.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및 운영지원	기안		○			
	차. 고위기 청소년 지원 및 연계	기안		○			
12.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위문, 결연)	기안		○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지원	기안		○			
13. 청소년 시설	가. 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 설치·운영허가	기안					○
	다. 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시설 운영 지도·점검	기안		○			
	마. 시설 허가취소·정지명령·청문	기안				○	
	바.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통지	기안		○			
	자. 시설 운영 위·수탁	기안					○

별표 1의 행정지원국 징수과 및 부과과 단위업무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단위업무란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단위업무란 중 제34호를 삭제하고, 제61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CCTV 통합관리	파.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1) 방법용 CCTV 계획	기안					○
	(2) 방법용 CCTV 업무 일반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업무를 조정하고,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 지정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별표)

1) 징수과·부과과 실·국 조정사항 반영

- 행정지원국 징수과, 부과과 → 기획조정실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2) 교육청소년과 신설

- 문화체육과 평생교육 관련 사무 삭제
- 가족정책과 청소년 관련 사무 삭제
- 교육청소년과 단위업무 신설

- 교육정책, 평생학습, 청소년 관련 사무 신설

나. 부서 간 사무 조정(별표)

- 1)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 주민소통담당관 → 안전정보과
- 2) 정보화교육 추진 : 안전정보과 → 교육청소년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679	486	15	56	9	113(4)
	정무직		1	1				
	일반직		677	484	15	56	9	113(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677	484	15	56	9	113(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9	24	3	3	1	8
		행정	25	15	3		1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40	109	3	10	2	16
		행정	64	52	3	1		8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	3	1			2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11	3				8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215	166	4	15	3	27
		행정	91	68	3	1	3	16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4	7				7
		사서	3	3				
		속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1	1				
		농업	3	3				
		농업/수위/해양수산	1	1				
		녹지	4	4				
		수위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200	125	3	25	3	44
		행정	73	41	2			30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전산	3	3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3				
		공업	4	1			1	2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	2	2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3				13	
		시설	21	21				
		방송통신	2	1				1
		운전	7	6			1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77	55	2	2	0	18(4)	
		행정	32	20				12(4)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4					
		숙기	1			1			
		공업	3	3					
		공업/환경	2	2					
		농업	1	1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별		계	1	1					
정 직	6급	소계	1	1					
	상당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증36명(643명 → 679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1) 본청 : 증21명(465명 → 486명)
- 2) 직속기관 : 증7명(49명 → 56명)
- 3) 동 : 증8명(105명 → 113명)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1) 5급 : 증1명

- 본청 : 증1명(행정 증1)

2) 6급 : 증8명

- 본청 : 증5명

- 행정 증3,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해양수산 감1, 시설

증2

- 직속기관 : 증1명(수의·의무·약무·간호 증1)

- 동 : 증2명(사회복지 증2)

3) 7급 : 증13명

○ 본청 : 증7명

- 행정 증2, 행정·시설 증2, 행정·학예연구 증1, 시설 증2

○ 직속기관 : 증1명(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증1)

○ 동 : 증5명(행정 증2, 행정·사회복지 증2, 사회복지 증1)

4) 8급 : 증10명

○ 본청 : 증4명(행정 증1, 행정·사회복지 증2, 시설 증1)

○ 직속기관 : 증5명(보건·의료기술·간호 증1, 간호 증4)

○ 동 : 증1명(행정 증2, 사회복지 감1)

5) 9급 : 증4명

○ 본청 : 증4명(행정 증2, 공업 증1, 녹지·시설 증1)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④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협의체의 목적, 기능 및 구성(제1조 ~ 제3조)
- 나.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제4조, 제5조)
 - ※ 위원 : 청년으로만 구성(19세 이상 34세 이하)
- 다.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라. 회의 등(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
-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담당관·과장, 직속 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울산광역시 북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진출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패)

소 속

직 성명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패)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포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가 2020. 12. 17. 개정 공포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선발대상(제1조, 제2조)
- 나. 모범공무원 추천(제3조)
- 다. 모범공무원 선발(제4조)
- 라.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제5조, 제6조)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72호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15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중 변경(안 제2조)

-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을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삭제

나. 위원장 변경(구청장 → 관장)(안 제2조의2제1항)

다. “문화업무담당 국장” 당연직 위원 삭제(안 제2조의2제2항)

3. 관계 법령 :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주소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북구문화예술회관
- 전화번호 : 052)241-7352, 팩스번호 : 052)241-7359

6. 기타사항

일부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 대비표
 3.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p> <p>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p> <p>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p> <p>3. (생략)</p>	<p>제2조(위원회의기능)-----</p> <p>-----</p> <p>-----</p> <p>-----.</p> <p>1.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구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1. (생략)</p> <p>2. <u>문화업무담당 국장</u></p> <p>3. ~ 5.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2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p> <p>----- <u>관장</u>-----</p> <p>-----.</p> <p>②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5.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 ⑤ (생략)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18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광학식디스크(CD)]	비고
일반용지	라벨용지		
46원/매 (A4용지)	218원/매 (A4라벨용지)	(1,000원×디스크개수)+(23원×면수)	

※ 최종 비용의 원단위 절사